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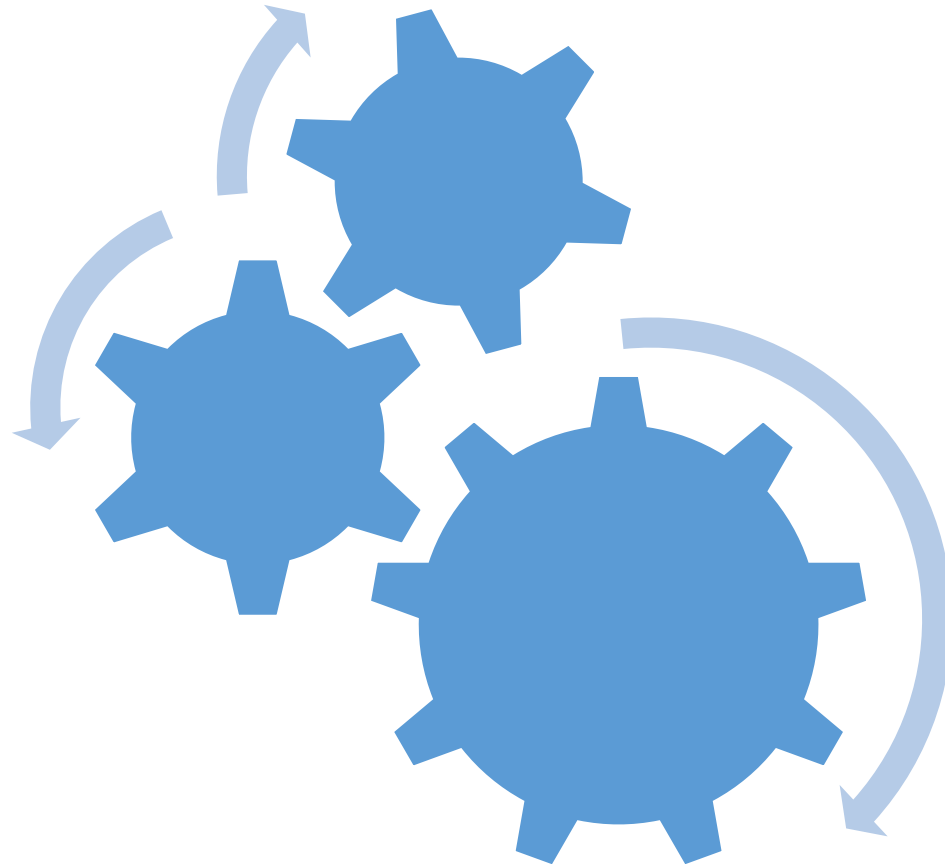
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관계

5월 집담회
(사)한국의료법학회
2020.05.28.(목), 19:00~, Webinar

주호노

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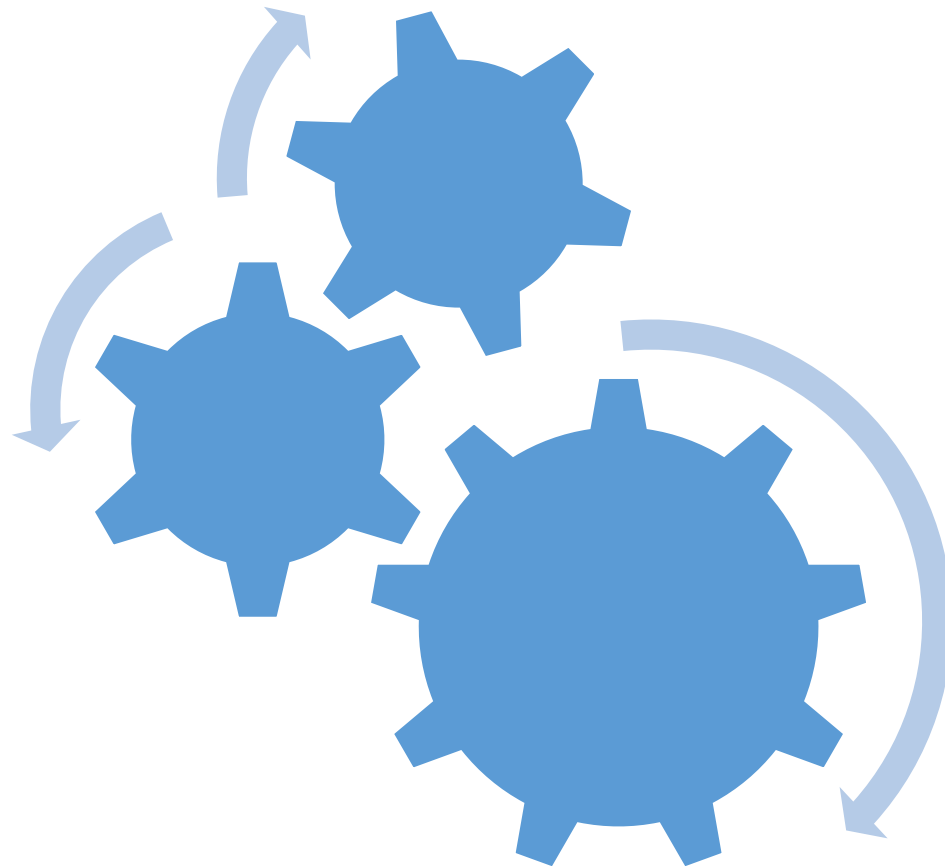
제1장 서론



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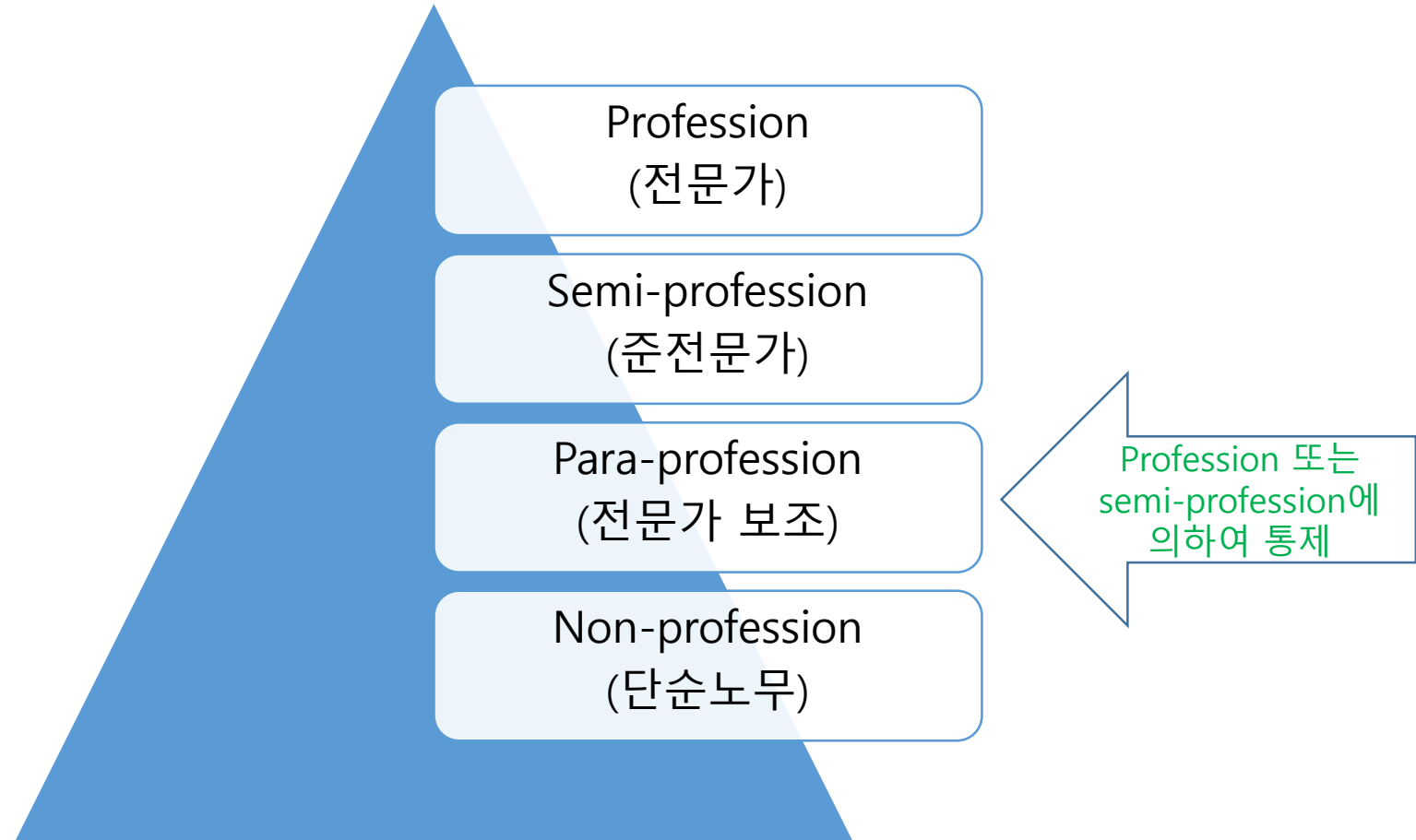
- 1. 서론
- 2. 전문직역에 있어서의 업무관계
- 3. 간호직역에 있어서의 업무관계
- 3. 결론

제2장 전문직역에 있어서의 업무관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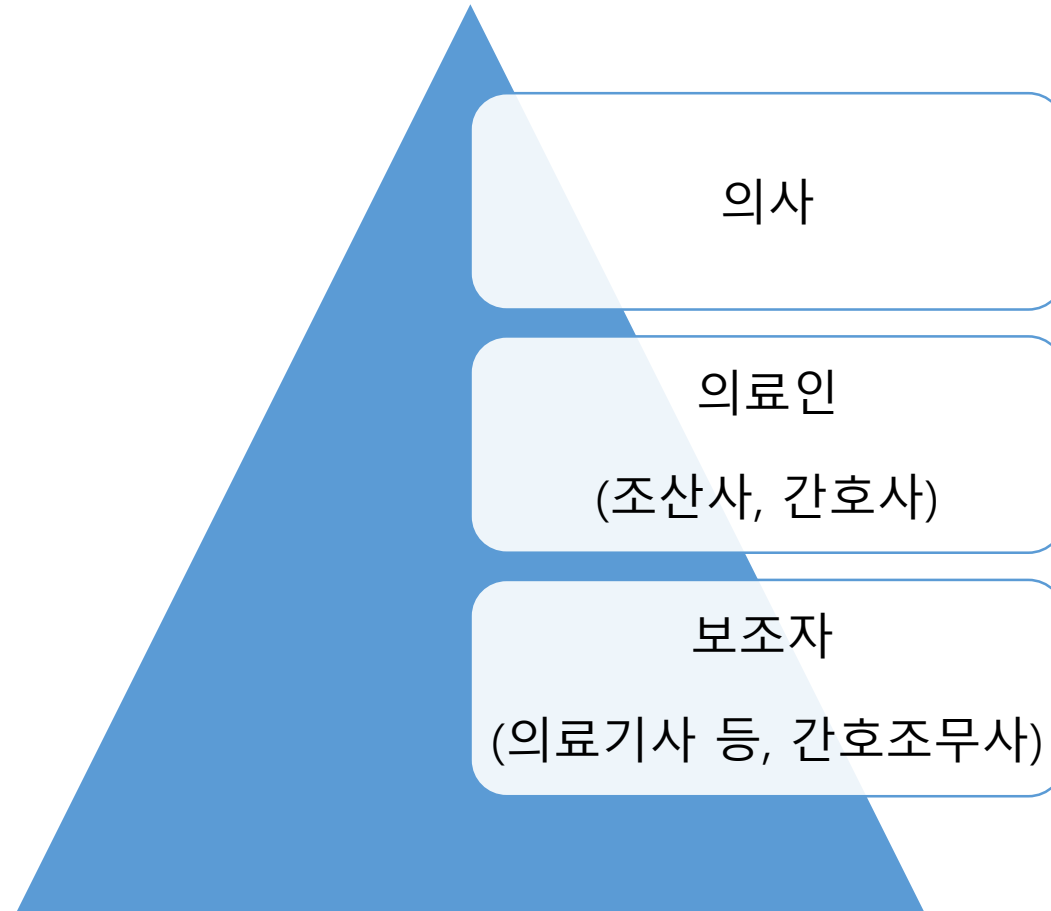
전문직의 요건과 계층구조

(전문직으로서의 3요건, 전문직은 상위직종과 하위직종으로 구성)



조직의료와 의사 중심주의

(현대의료의 특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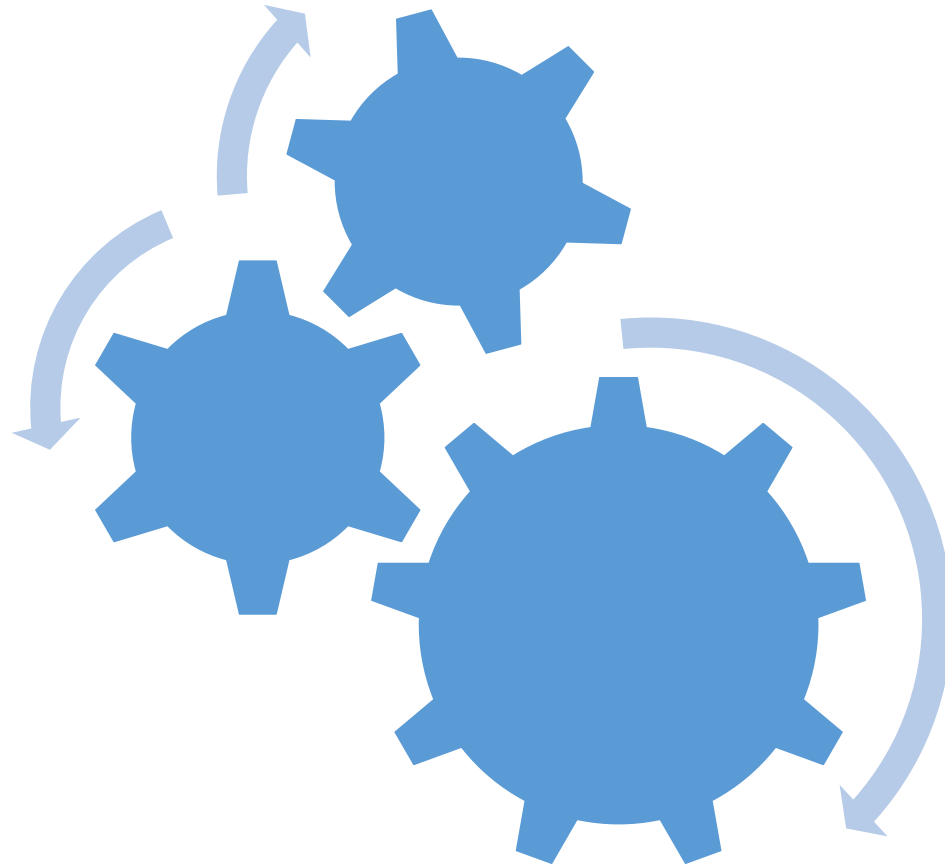


간호영역과 간호사 중심주의

(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, 간호일원화)



제3장 간호직역에 있어서의 업무관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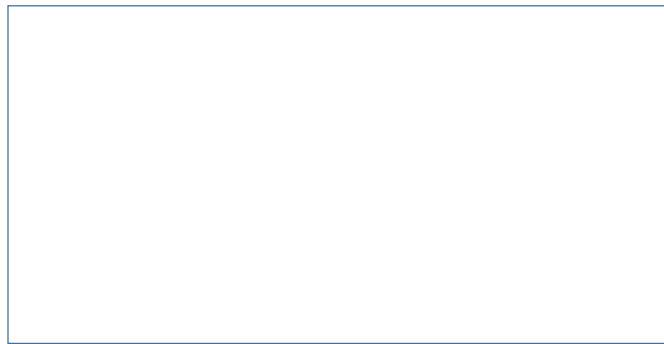
간호사의 업무와 임무

(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)



간호조무사의 업무

(의료법 제80조의 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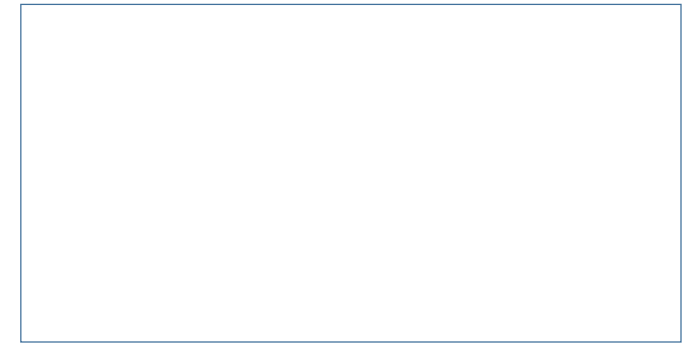


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
도 불구하고 간호사를
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
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
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

간호보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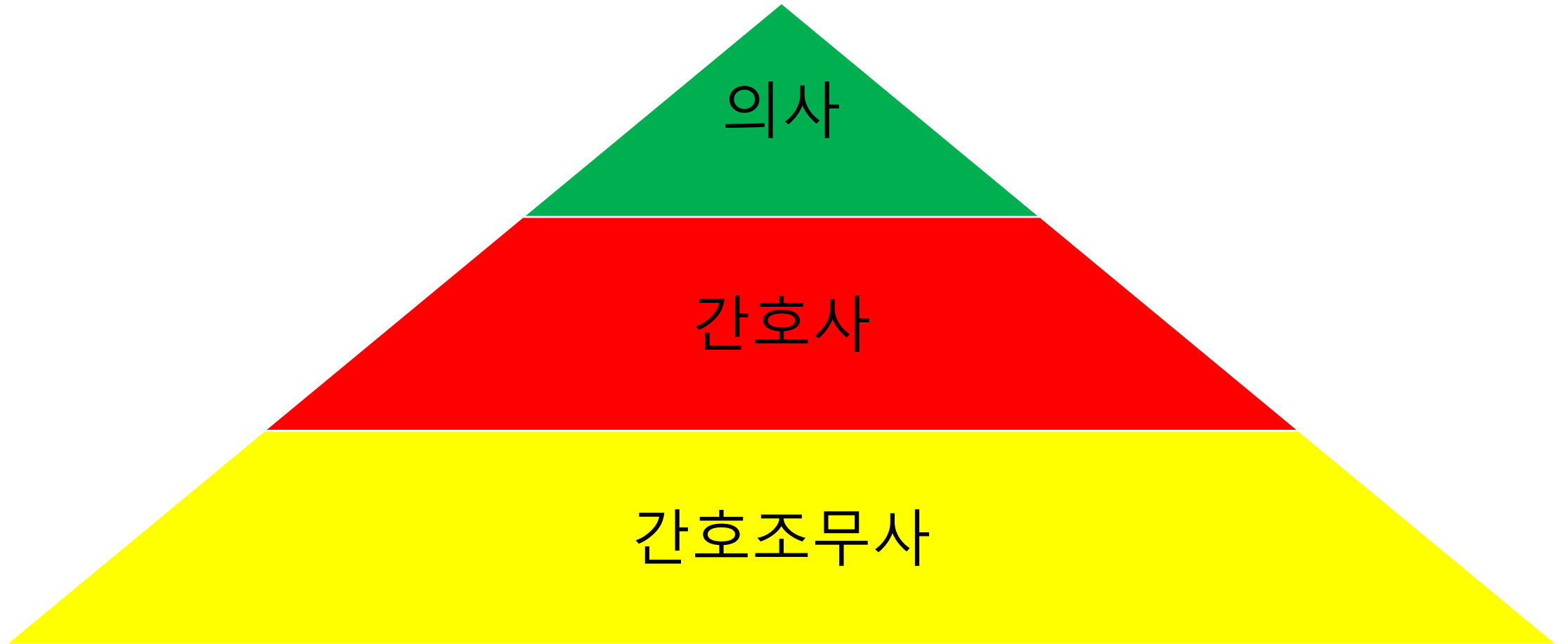
진료보조

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
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
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
한하여 의사, 치과의사, 한
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
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
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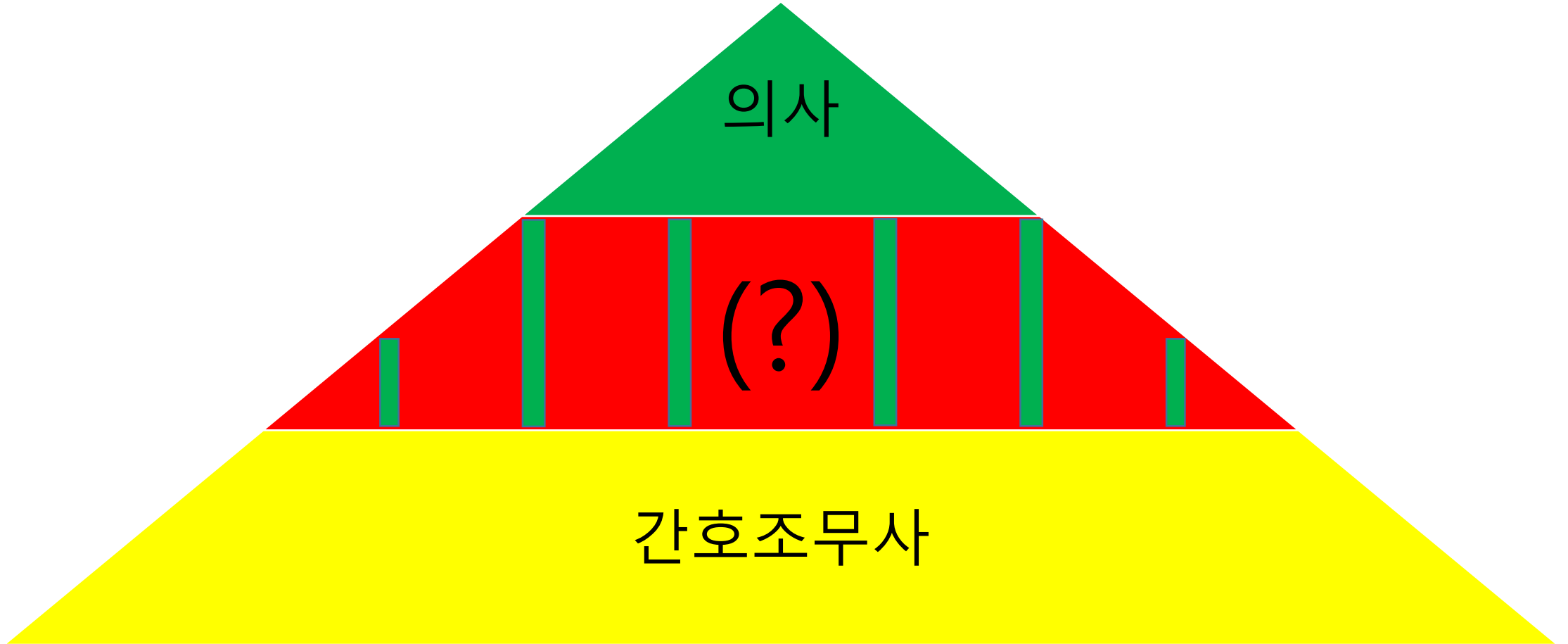
진료보조의 구조도(원칙)

(3자 구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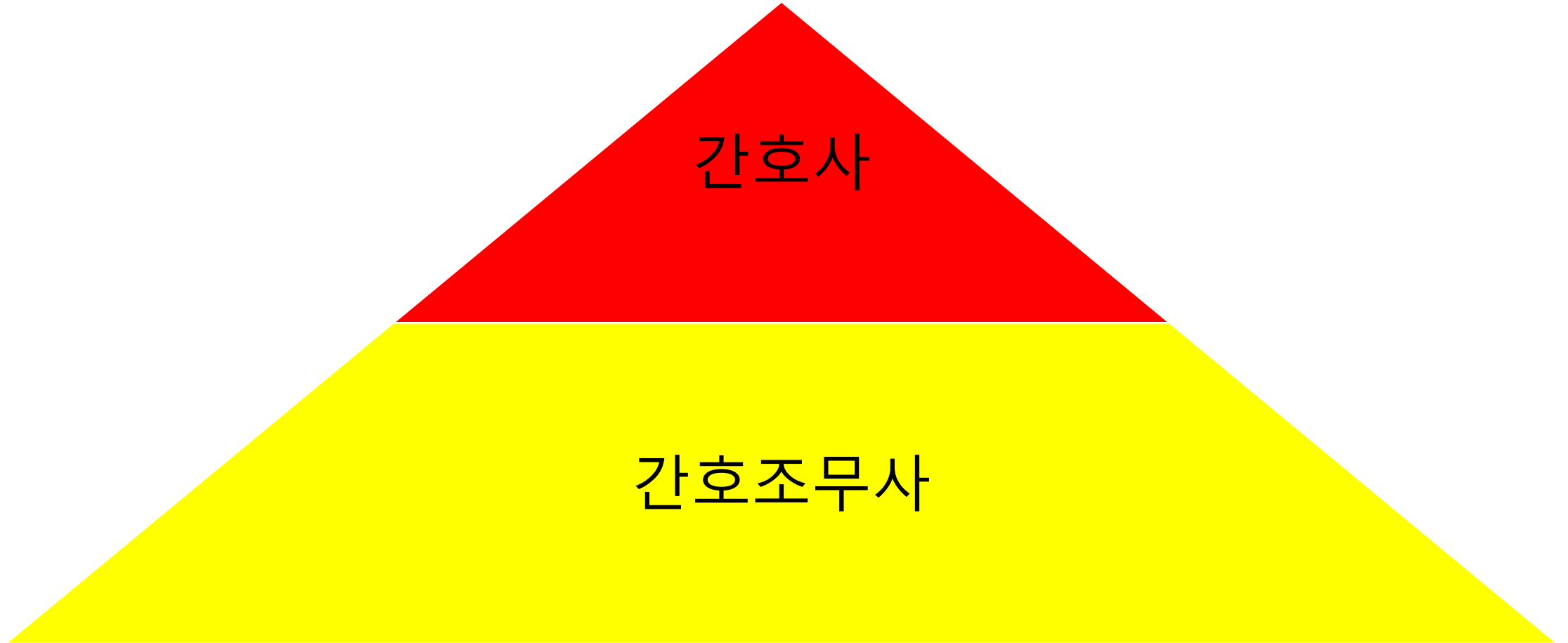
진료보조의 구조도(예외)

(2자 구조: 간호사의 빈자리를 의사가 메워야 하는 구조, 즉 빈자리에 해당하는 간호행위에 대하여는 의사가 간호사를 대신하여 직접 행하여야 하는 구조. 이 부분은 간호조무사에 의하여는 보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되기 때문. 다만, 의원급에는 간호사수준의 고도의 간호요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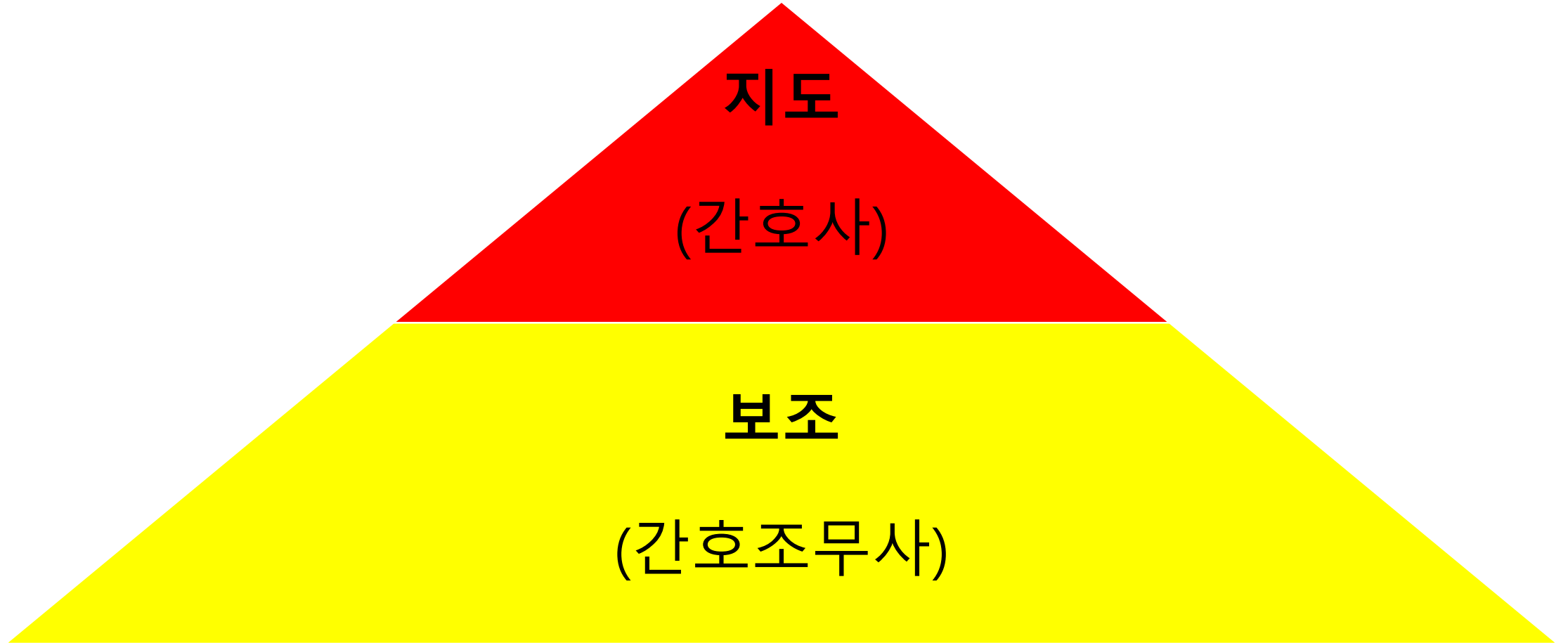
간호보조의 구조도

(2자 구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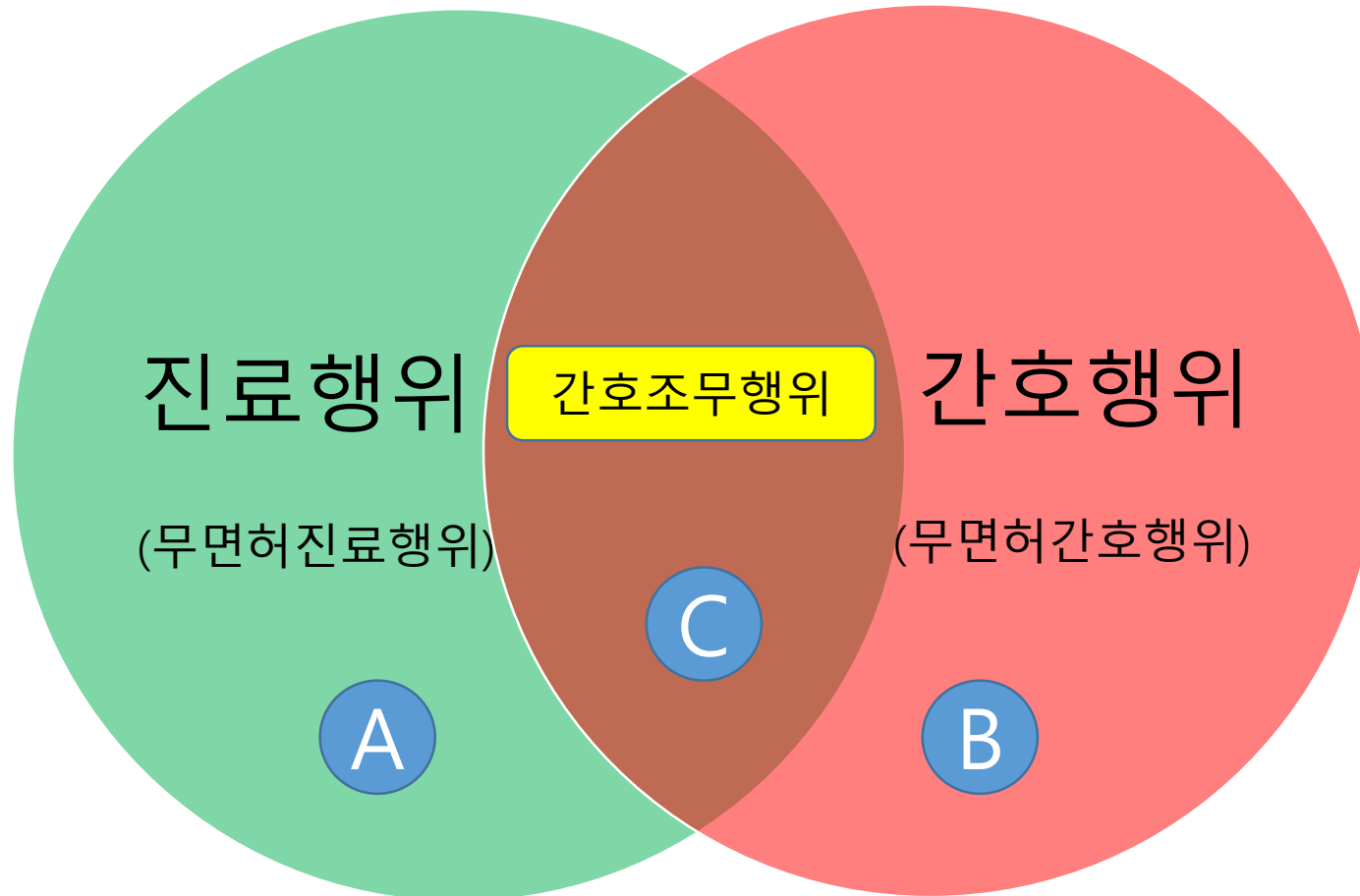
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관계

(지도와 보조의 관계)



간호조무행위 가능영역

(간호행위와의 양적 차이)



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(1)

(대법원 2007.06.28. 선고 2005도8317 판결)

- 의사가 속눈썹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시술자의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낭을 속눈썹 시술용 바늘에 일정한 각도로 끼우고 바늘을 뽑아낸 뒤 이식된 모발이 위쪽을 향하도록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한 행위나,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식모기를 피시술자의 머리부위 **진피층**까지 **찔러 넣는 방법으로** 수여부에 모낭을 삽입하도록 한 행위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.

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(2)

(대법원 1986.07.08. 선고 86도749 판결)

- 간호보조원이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 등 초진을 하고 발치, 주사, 투약 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.

간호조무사의 무면허간호행위

(현재는 고등법원 민사판례만 나와 있지만, 판례 축적 시작)



<http://blog.daum.net/dohh100/216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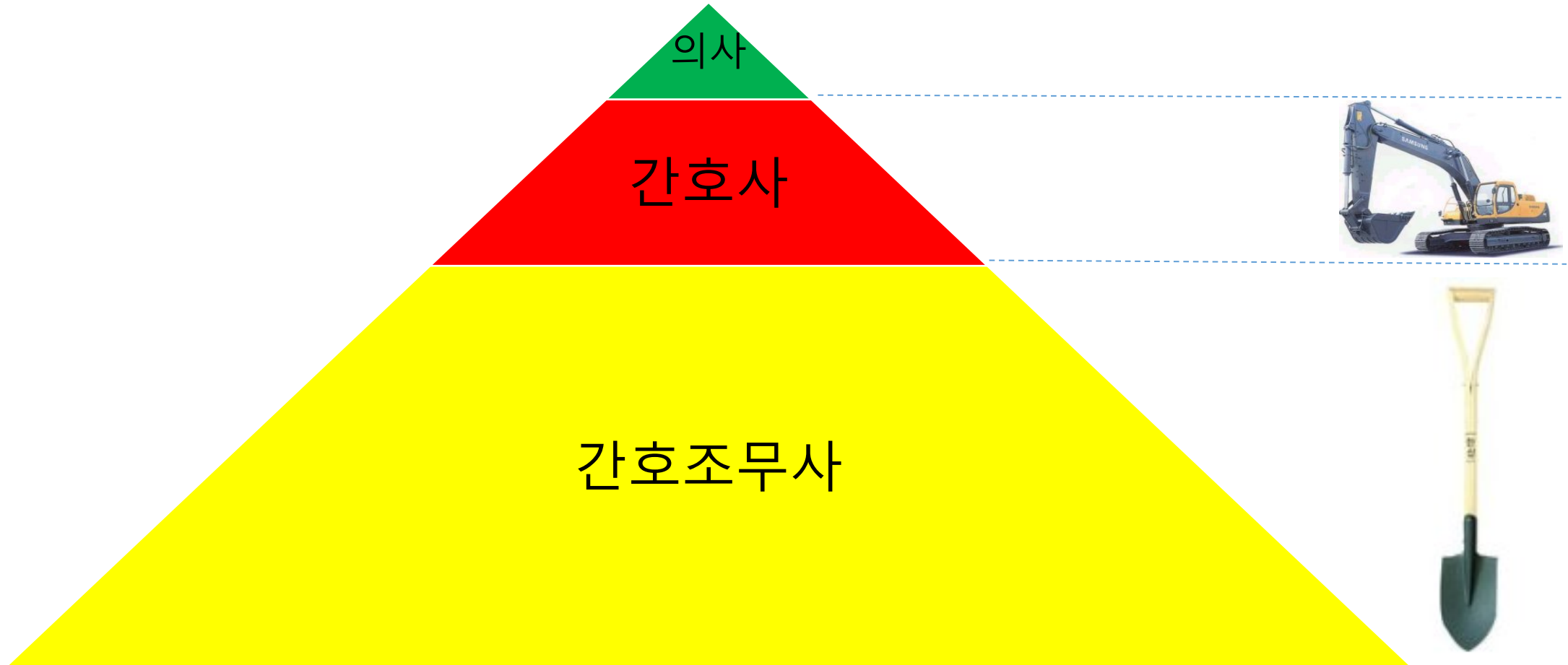
간호조무사의 무면허간호행위

(구급차에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탑승한 경우: 간호보조행위-부정)

- 서울고등법원 2018.10.04 선고 2017나2067170판결
-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탑승하여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피고는 이 사건 구급차를 의료지원을 위해 보내면서 차량 운전자와 간호조무사만을 탑승시켜 보냈을 뿐 응급구조사는 보내지 않았는 바, 그 결과 이 사건 구급차가 망인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, 피고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로서 구급차를 출동시킬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법에서 '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,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'고 정하고 있으므로, 간호조무사가 탑승한 것은 간호사가 탑승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더라도 응급의료법 제48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구 의료법 제80조 제2항(2015. 12. 29.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, 이 경우 의료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간호조무사에도 준용하고 있으나, 이 사건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탑승하여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

간호조무사의 보조범위

(간호사 업무와의 질적 차이)



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의 의미

(대법원 2011.07.14. 선고 2010도1444 판결)

-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, 이때 말하는 **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**을 가리키므로,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의 의미

(위의 '진료보조의 의미'에서 진료-의사-진료행위를 각각 간호-간호사-간호행위로 대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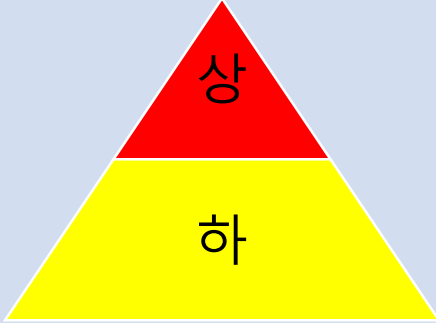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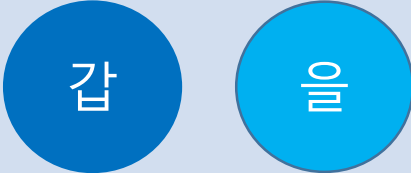
지도의 방법

(진료지도의 방법, 간호지도의 방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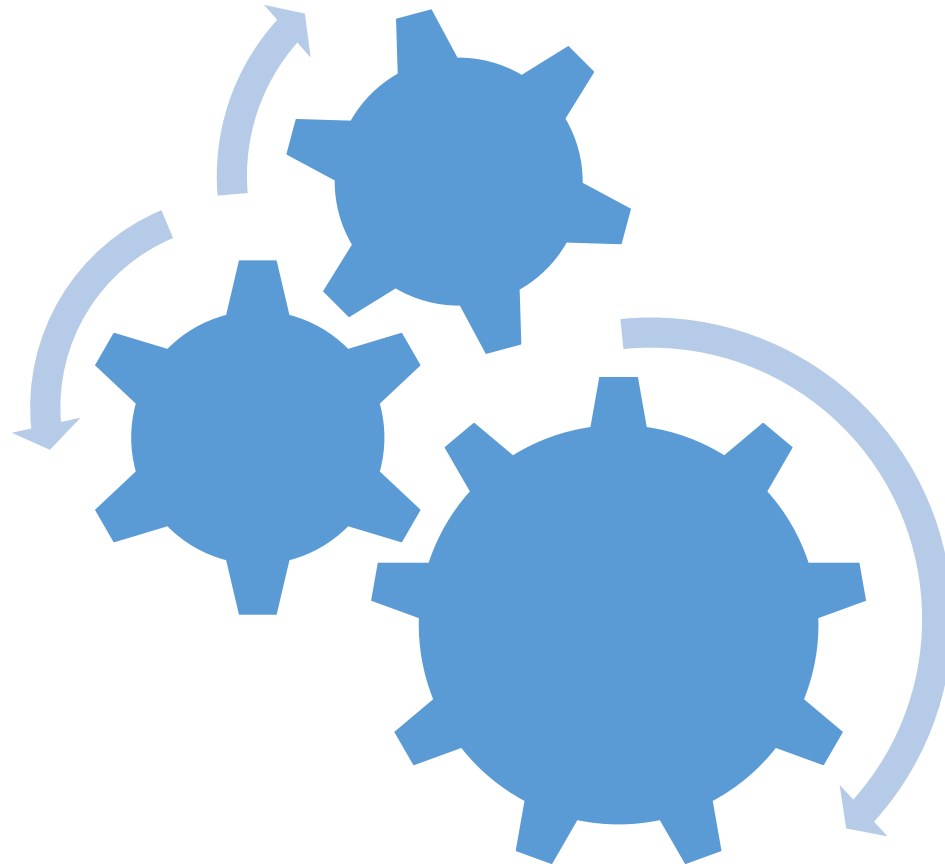
- **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도3667 판결**
- 간호사가 '진료의 보조'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,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·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,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,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,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의료분업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과 책임

(신뢰의 원칙과 의료분업자의 책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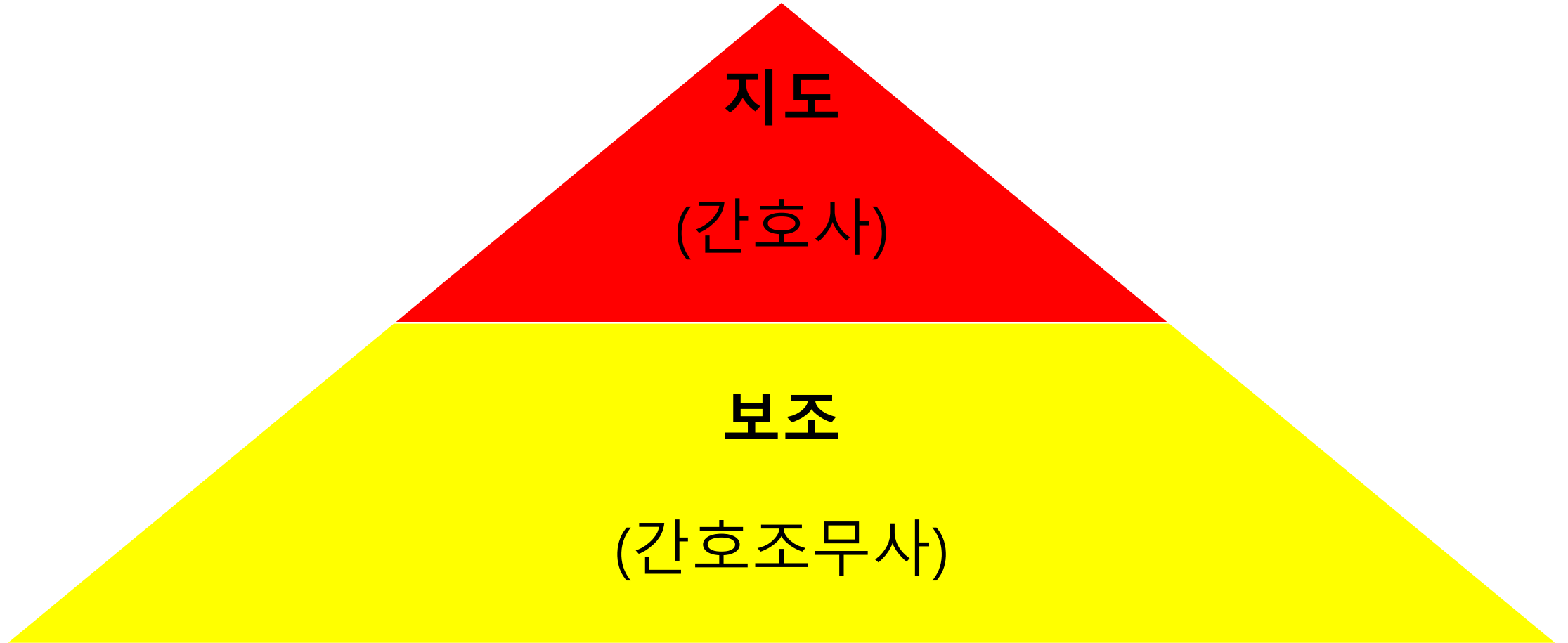
구분		수직적 분업	수평적 분업
분업형태			
책임	상위직	지시 행위에 대한 책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책임 • 간호사-간호조무사 관계에는 해당 없음
	하위직	지시불이행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	

제4장 결론



수직적 분업관계의 정착

(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관계)





주호노